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내용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규정
 -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
- 회의 공개를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안 제6조제3항)
- 회의록 작성 비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위촉의 해지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회의공개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설된 안 제7조의2 및 안 제8조의2는 회의록 작성비치와 위촉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자는 안이라 생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